

상업회계법

(商業會計法)

(민국 98년 06월 03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회계증빙

제3장 회계장부

제4장 회계과목 및 재무보고서

제5장 회계사무 처리절차

제6장 기장의 기초

제7장 손익계산

제8장 결산 및 심사

제9장 벌칙

제10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상업회계 사무의 처리는 이 법에 따라 규정한다.

공영사업의 회계사무의 처리는 그 밖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범위는 상업등기법, 회사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에서 상업회계 사무의 처리는 상업의 회계사무의 판별, 형량, 기재, 분류, 총결산 및 이를 근거로 편성하는 재무보고표를 말한다

제3조 이 법에서 주관기관은 중앙은 경제부이고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이며 현(시)는 현(시)정부이다.

주관기관의 권리와 책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一. 중앙 주관기관 :

(一) 상업회계법령과 정책의 제정 및 선전.

(二) 등기를 수리하는 회사의 상업회계사무의 관리.

二. 직할시 주관기관 : 중앙 주관기관이 등기를 위탁한 회사 및 등기를 수리하는 회사의 상업회계사무의 관리.

三. 현(시) 주관기관 : 등기를 수리하는 상업회계사무의 관리.

제4조 이 법에서 상업책임자의 범위는 회사법, 상업등기법 및 그 밖의 법률의 유관규정에 따른다.

제5조 상업회계사무의 처리는 회계인원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회사조직인 상업의 주관회계인원의 임면은 주식유한공사에서 이사회와 과반수 이사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유

한공사에서는 전체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무한공사, 양
합공사에서는 전체 무한책임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전항의 주관회계인원의 임면은 회사 정관에 유효하고 더욱 엄격한 규정
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계인원은 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이직 또는 직무
변경은 5일 이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상업회계사무의 처리는 회계사 또는 법에 따라 타인의 회계사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회사조직
의 상업의 상업회계사무 처리 위탁의 절차는 제2항 및 제3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상업은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법
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영업 상에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상업은 국내 화폐를 기장단위로 하며 업무의 필요에 따라 외국화폐로
기장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그 결산보고서에는 외국화폐를 국내 화폐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상업회계의 기재는 기장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사실의 필요에 따라 주석을 첨가하거나
외국문자를 병용하거나 현지에서 통용되는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만의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상업의 지출이 일정 금액에 달한 경우 환어음, 어음, 수표, 할당, 전자 송금, 이체 또는 그 밖의 주관기관의 허가를 득한 지급도구 또는 방법은 수령인을 명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일정 금액은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다.

제10조 회계는 기본적으로 권책발생제를 채택한다. 평상시에는 현금수급제를 채택하는 경우 결산시 권책발생제로 조정하여야 한다.

권책발생제란 수익이 확정되어 수급할 시 비용은 지급 확정시에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결산 시 수익 및 비용은 해당 연도에 귀속하여 기록한다.

현금수급제란 수익은 현금 수입 시 또는 비용은 현금 지급 시에 장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상업의 자산, 부채 또는 업자의 권익에 증감의 변화가 발생한 사항을 회계사항이라고 말한다.

회계사항이 상업 이외의 자에게 관련되어 권책관계가 발생한 경우 대외 회계사항이라고 한다. 상업 이외의 자에게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부회계사항으로 말한다.

회계사항의 기록은 복식 장부방식을 응용한다.

제12조 중앙 주관기관은 상업에 통용되는 회계제도의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동일한 성질의 상업은 동업공회가 그 업류의 회계제도의 규범을 제정하여 중앙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한다.

상업은 그 실제적인 업무의 정황, 회계사무의 성질, 내부 통제 및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그 회계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상업에 통용되는 회계증빙, 회계과목, 장부 및 재무보고표의 명칭, 양식 및 재무보고표 편성방법 등 유관규정의 상업회계처리준칙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2장 회계증빙

제14조 회계사항의 발생은 모두 증명할 수 있는 회계증빙을 취득, 증여 또는 자체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업회계증빙은 다음의 세 종류로 구분한다.

- 一. 원시증빙 : 회계사항의 경과를 증명하여 기장증빙의 근거가 되는 증빙을 작성한다.
- 二. 기장증빙 : 회계사항을 처리하는 인원의 책임을 증명하여 기장증빙의 근거가 되는 증빙을 작성한다.

제16조 원시증빙의 종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一. 외래증빙 : 상업 자체 이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
- 二. 대외증빙 : 상업 자체 이외의 자에게 준 경우.
- 三. 내부증빙 : 상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경우.

제17조 기장증빙의 종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一. 수입전표.

二. 지출전표.

三. 이체전표.

전항에서 이체전표란 사실의 필요에 따라 현금이체전표와 분류이체전표로 구분한다.

각종 전표는 색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한다.

제18조 상업은 원시증빙에 근거하여 기장증빙을 편성하고 기장증빙에 근거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정리 및 결산 후 이체 항목 등의 사항은 원시증빙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업회계사무의 정리 또는 원시증빙이 이미 기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로 기장증빙을 제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원시증빙으로 기장증빙을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 대외회계사항은 외래 또는 대외증빙이 있어야 한다. 내부회계사항은 내부증빙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원시증빙이 사실 상 취득할 방법이 없거나 의외의 사고로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법령에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 이외에도 사실 및 금액에 근거하여 증빙을 작성하고 상업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기장으로 삼는다.

원시증빙을 취득할 수 없는 회계사항의 상업 책임자는 같은 사항을 처리하고 주관하는 인원에게 각각 또는 공동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장부

제20조 회계장부는 다음 2종류로 구분한다.

- 一. 순서장부 : 회계사항의 발생 시 순서 위주로 기록하는 경우.
- 二. 분류장부 : 회계사항의 귀속 과목을 위주로 기록하는 경우.

제21조 순서장부는 다음의 2종류로 구분한다.

- 一. 일반 순서장부 : 모든 사항에 대해 순서로 등기하거나 특정한 순서 항목의 결산으로 등기하는 경우이며 일장부 또는 분류장부 등이 속한다.
- 二. 특수 순서장부 : 특수한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경우이며 현금장부, 열쇠장부, 수출입장부 등이 속한다.

제22조 분류장부는 다음 2종류로 구분한다.

- 一. 총 분류장부
- 二. 명세 분류장부

제23조 상업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회계장부는 보통 순서장부 및 총분류장부이다. 제조업 또는 영업범위가 비교적 큰 경우 자본금을 기록하는 장부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특수 순서장부 및 각종 명세분류장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제도는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상업 책임자 및 회계인원이 회동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상업이 설치한 회계장부는 모두 회수에 따라 순서대로 번호가 주어지며 훼손될 수 없다.

제25조 상업은 회계장부목록을 설치하여 그 사용한 장부명칭, 성격, 사용 또는 정지 일자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 책임자 및 회계인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상업회계장부에 기재된 인명계좌는 그 사람의 진짜 성명을 명기하고 장부 내에 주소를 명기하여야 함 만약 공유인의 계좌인 경우 대표인의 진짜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상업회계장부에 기재된 재물장부는 그 명칭, 종류, 가격, 수량 및 존치 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과목 및 재무보고서

제27조 회계과목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9종류로 구분한다.

一. 자산류 : 유동자산, 기금 및 장기투자, 고정투자, 소모투자, 무형자산, 그 밖의 자산 등 항목.

二. 부채류 : 유동부채, 장기부채, 그 밖의 부채 등 항목.

三. 업체권익류 : 자본 또는 주주, 공탁, 이윤 등 사항.

四. 영업수입류 : 판매수익, 노무수입, 업무수입 그 밖의 영업수입 등 사항.

五. 영업자본류 : 판매수익, 노무수입, 업무수입, 그 밖의 영업자본금 등 사항.

- 六. 영업비용류 : 판매비용, 관리 및 총괄비용 등 사항.
 - 七. 영업 외 수익 및 손해류: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등 사항.
 - 八. 비상손익류 : 성격이 특수하고 자주 발생하는 항목.
 - 九. 소득세 : 당기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세비용 또는 소득세이익.
- 전항 회계과목의 분류는 상업이 실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28조 재무보고표는 다음의 몇 종류를 포함한다.

- 一. 자산부채표.
- 二. 손익표.
- 三. 현금유동량표.
- 四. 업체권익변동표 또는 누적이윤변동표 또는 이윤표.

전항 각 관의 보고표는 필요한 주석을 첨부하여 재무보고표의 일부분으로 본다.

제1항 각 관의 재무보고표는 상업이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별도로 각 과목별 명세표와 자본계산표를 편성한다.

제29조 전 조 제2항에서 재무보고표에 필요한 주석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 一. 재무재표가 이 법 또는 이 법이 수권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에 따른 편성.
- 二. 중요한 회계정책의 총집 설명 및 평가기초.
- 三. 회계방법의 변경의 이유 및 재무재표에 대한 영향.

- 四. 채권자의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
- 五. 자산과 부채간의 유동과 비유동의 분류기준.
- 六. 중대한 약속 사항 및 부채.
- 七. 이윤분배로 받게되는 제한.
- 八. 업주권익의 중대한 사항.
- 九. 중대한 다음 회기의 사항.
- 十. 그 밖의 열람자의 오인을 막거나 재무보고표의 공정한 표현에 필요한 설명에 관한 사항.

전항에 주석을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은 재무보고표 상에 각각의 관련 과목 후에 설명하거나 주석을 달아 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재무보고표의 편성은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별도로 편성한 각종 정기 및 비정기보고표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재무보고표 상의 과목은 사실의 필요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규정하며 적당한 분류를 실시하고 전후기의 과목 분류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전기의 과목분류와 당기가 일치하지 아니할 시 재차 분류하고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연도재무보고표의 양식은 새로 설립된 사업을 제외하고 2연도 대조방식을 채택하여 해당 연도 및 전년도 금액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사무 처리절차

제33조 진실한 사항에 근거하지 아니하고서 어떠한 회계증빙자료도 작성할 수 없으며 회계장부 내에 어떠한 기록도 할 수 없다.

제34조 회계사항은 발생 회수에 따라 날짜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2개월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다.

제35조 기장증빙 및 회계장부는 상업을 대표하는 책임자, 경영인, 주관 및 회계인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책임져야 한다.

다만 기장증빙이 상업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경영인, 주관 또는 회계인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득한 자에게 수권한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6조 회계증빙은 날짜 또는 월별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시 증빙이 있는 경우 기장 증빙의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회계장부를 권책이 존재하는 증빙 또는 영구적으로 보존하거나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일자와 번호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 대외증빙의 필사는 최소한 사본 또는 부분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사본 또는 부분 상에 기재된 사항의 요점 및 금액은 정본과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대외증빙의 정본 또는 부분은 모두 순서에 따라 번호가 있어야 하며 그 사본 또는 부분은 장부로 만들어야 한다. 그 정본의 오기 또는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는 경우 원 번호의 사본 또는 부분 상에 부착하고 모자라거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본 또는 부분 상에 그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 각 항목의 회계증빙은 영구히 보관하여야 하거나 미결의 회계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연도 결산절차에 따라 종료한 후 최소한 5년을 보관하여야 한다.

각 항목의 회계장부 및 재무보고서는 연도 결산절차의 종료 후 최소한 10년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미결의 회계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9조 회계사항에 있어 취득하여야 하고 아울러 취득할 수 있는 회계증빙이 처리자 또는 같은 항목을 주관하는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같은 항목의 회계증빙이 훼손, 결핍 또는 멸실되어 상업에 손해를 조성하였을 시 같은 처리자 또는 주관인원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0조 상업은 전자방식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인 회계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내부통제, 입수된 자료의 수권과 결재방식, 회계자료의 저장, 보관, 시정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전자방식을 채택하여 회계자료를 처리하는 경우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기장의 기초

제41조 각 자산은 취득, 제조 또는 건조 시의 실제 자본금을 기장원칙으로 한다.

실제 자본금이란 모든 자산을 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가격 및 취득하여 영업 상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합리적인 지출을 말한다. 자체적으로 제조 또는 건조하는 경우 자체 제조 또는 건조시점부터 영업 상에 사용되거나 판매하여 발생하는 직접 자본 및 분담하여야 하는 간접 비용을 말한다.

제42조 자산의 취득에 있어 현금 이외의 기타 자산 또는 부채의 승계로 교환하는 경우 공정한 가격을 기장의 원칙으로 삼는다. 공정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시 자산과 교환한 장부금액에 지급한 현금을 더하거나 수취한 현금을 감하여 교환한 자산 자본금으로 삼는다.

수증자산은 공정가격에 따라 기장하고 그 성격에 따라 자본적립, 수입 또는 수입 차감에 포함한다. 공정가격이 없을 시 적당한 평균가로 계산할 수 있다.

공정가격이란 거래 쌍방이 거래 사항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거래의 의사가 있어 정상적인 거래 하에서 달성한 자산 또는 부채를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

제43조 상품재고, 재고자료, 제조 중 물품, 완제품, 부산품 등 재고의 측정은 실제 자본금을 원칙으로 한다. 자본금이 순현금화가치보다 많을 시 순

현금화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하락한 손실은 상품판매 자본에 포함하여야 한다.

순현금화가치란 기업이 예상하는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판매한 물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순액을 말한다.

제1항의 자본은 재고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개별판별법, 순서법, 가권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그 밖의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별판별법이란 개별 재고를 실제 자본에 따라 사용 또는 판매한 자본으로 본다.

순서법이란 동종의 또는 같은 성질의 재고를 취득한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입하한 부분의 자본을 가장 최근에 사용 또는 판매한 부분의 자본으로 본다.

가권평균법이란 동종의 또는 같은 성질의 재고를 당기의 각각 취득한 총액과 초기 잔여액을 합하고 같은 항목의 재고의 당기의 각각 취득한 수량과 초기 수량의 합을 제하여 얻은 평균 단가를 당기에 사용 또는 판매한 부분의 자본으로 본다.

이동평균법이란 동종의 또는 같은 성질의 재고를 각 회차별 취득한 수량 및 가격과 그 전의 잔여액을 함께 계산하여 얻은 가권평균단가를 사용 또는 판매한 부분의 평균단위자본으로 본다.

제44조 유가증권투자의 기장은 취득 시의 실제 자본금을 원칙으로 하며 전

조 규정의 재고 자본금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유가증권투자는 그 성질에 따라 공정가격, 자본, 분담 후 자본의 방법을 채택하여 평균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통제능력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장기 주권투자는 권익법평가를 채택한다.

전항의 권익법이란 피투자회사의 주주권익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발생하였을 시 투자회사는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의 장부가격을 증감하고 그 성격에 따른 투자손익 또는 자본적립을 말한다.

제45조 각 채권의 평가는 계산한 부실액수를 제한 잔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아울러 각각 해당 항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미 대도적립금으로 확정된 경우 채권관련 항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대도적립금이 상계에 부족할 시 부족한 액수는 당기 손실액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어음은 영업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어음과 각각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6조 감가상각형 고정자산은 누적감가항목을 설치하여 각각 해당 자산의 감소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연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시 그 잔존가액을 계산하고 감가상각의 방식에 따라 우선 잔존가액을 계산한 경우 잔존가액을 감한 후의 잔

여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이미 만료하였어도 여전히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잔존가액에 대하여 계속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제47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평균법, 정액감소법, 연수합계법, 생산수량법, 작업시간법 또는 그 밖의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친 감가상각법을 기준으로 한다. 자산의 종류가 많은 경우 분류하여 종합계산할 수 있다. 평균법이란 고정자산의 예상 사용연수에 따라 매 기마다 상동하는 감가상각액을 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액감소법이란 고정자산의 예상 사용연수에 따라 공식으로 그 감가상각률을 계산하여 매 연도마다 고정자산의 장부가치로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연수합계법이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총액에 1회 감소에 해당하는 분수를 곱하며 그 분모는 사용연수의 합계수이고 분자는 각 사용 연차의 상반된 순서를 적용하여 각 항목의 감가상각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생산수량법이란 고정자산의 고정자산의 예상 총생산량에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총액으로 나누고 1단위의 생산량 당 부담하여야 하는 감가상각액을 산출하고 매 연도의 실제 생산량을 곱하여 각 분기별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시간법이란 고정자산의 예상 전체 사용시간에서 감가상각하여야 하

는 총액을 제하고 1단위 작업시간 당 부담하여야 하는 감가상각액을 산출하여 매 연도의 실제 사용한 작업 총시간을 곱하여 각 분기별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 지출한 효과가 이후의 각 기에 관련되는 경우 자산에 포함한다. 그 효과가 다만 당기에 미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 비용 또는 손실에 포함한다.

제49조 소모자산은 누적 소모항목을 설치하여 분기 별로 소모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0조 구입한 상업 신용,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그 밖의 무형자산은 실제 자본을 취득 자본으로 한다.

전항의 무형자산이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취득한 경우 다만 등기를 신청한 자본금을 취득 자본으로 하고 발생한 연구지출 및 발전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본다. 다만 중앙 주관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무형자산의 경제효익기간을 합리적으로 계산한 경우 효익 존속기간에 따라 할부 상환하여야 한다. 상업신용 및 그 밖의 경제효익기간이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형자산인 경우 정기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며 감소한 부분이 있으면 손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상업의 창업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전항의 창업기간이란 상업의 개시 준비부터 계획한 주요 영업활동을 개

시하여 중요한 수입을 발생하기 전까지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51조 고정자산, 소모자산 및 무형자산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재차 평가할 수 있다. 자가용 토지는 공고한 시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2조 전 조에 따라 재평가하거나 조정한 자산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는 업체의 권익항목의 미실현 재평가 부가가치에 포함하여야 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그 재평가 후의 가격을 기입하고 재평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감가상각, 소모 또는 분할 상환한 계제는 모두 재평가 가치를 기초로 한다.

자가용 토지는 공고된 시가에 따라 조정한 후 발생한 부가가치를 예상 토지 부가가치세 준비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소하여야 는 준비금을 제한 후 업체 권익항목의 미실현 재평가 부가가치에 포함한다.

제53조 선불비용은 미래에 유익하여야 하며 향후 기간에 부담할 비용을 확정하고 그 평가액은 유효한 기간 내에 계산하지 아니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용품의 재고 평가는 미소모부분의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 밖의 감소비용의 평가는 미 분할 상환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4조 각종 부채는 그 만기 도래 시 상환하여야 하는 액수에 따라 현시가를 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영업 또는 주요 거래의 목적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1년 이내에 상환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만기 도래 시에 포함할 수 있다.

회사채의 프리미엄 또는 환산가격은 회사채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감소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55조 자본을 현금 이외의 재물로 대신한 경우 같은 항목의 재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계산할 수 있는 시가가 없을 시 짐작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 회계사항의 기장기초 및 처리방법은 그 이후에도 일관되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재무재표 중에 그 이유, 변경 상황 및 그 영향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업이 합병, 분할, 인수, 해산, 중지 또는 양도될 시 그 자산의 계산은 그 성격에 따라 공정가격, 장부가격 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장 손익계산

제58조 사업이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전체 수익에서 당기의 전체 자본금, 비용 및 손실 후의 차액을 감하여 당기의 세전순익 또는 순손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영리사업 소득세를 재차 감한 후에 당기 세후순익 또는 순손실로 포함한다.

전항의 전체 수익 또는 전체 자본, 비용 및 손실은 결제기간을 포함하며 권책발생제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 각종 손익 및 비상 손익 등을 포함한다.

수입의 상쇄액은 비용에 포함할 수 없으며 비용의 상쇄액은 수입에 포

함할 수 없다.

제59조 영업수입은 거래 완성 시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공정계약의 공정손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한 경우 완공기 이전에 완공비율법에 따라 계산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분할납부로 인한 판매수입은 그 성격에 따라 총수익의 백분율로 계산하여 기입할 수 있다. 노무수입은 그 성격에 따라 분할하여 제공한 경우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전항의 거래 완성 시 현금수급제를 채택한 사업이란 현금으로 수취하고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책발생제를 채택한 상업은 물품을 교부하거나 노무의 제공 완료 시를 말한다.

제60조 영업자본 및 비용은 획득한 영업수입과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당기에 포함하여야 한다.

손실은 발생한 분기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1조 상업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직원의 재직 기간에 법에 따라 퇴직준비금을 할당하고 상업과 완전히 분리될 시의 퇴직준비금 또는 퇴직기금을 할당하여 당기 비용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62조 영리사업소득세 신고 시 각 항목의 소득 계산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며 장부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조 예상할 수 없는 의외의 손실로 인하여 할당한 준비금이나 사실적인 필요에 따라 할당한 개량 및 확충준비금, 부채상환준비금 및 그 밖의 성격에 따라 보류 이윤에서 인출하여야 하는 준비금은 연도의 비용 또

는 손실에 관한 인출로 간주할 수 없다.

제64조 상업의 업자에 대해 분배하는 이윤은 비용 또는 손실로 간주할 수 없다. 다만 부채성격의 특별주식의 주식이자자는 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장 결산 및 심사

제65조 상업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필요 시 1개월 반을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 상업의 매 회의 결산은 다음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一. 영업보고서.

二. 재무보고서.

영업보고서의 내용은 경영방침, 실시상황, 영업계획 실시성과, 영업수지 예산집행 상황, 이윤획득능력분석, 연구발전 상황 등을 포함한다.

그 항목 양식은 상업이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정한다.

결산보고표는 상업을 대표하는 책임자, 경영인 및 주관 회계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7조 지사기구의 상업은 회계연도 종료 시 그 본사, 지사기구의 장부를 함께 처리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제68조 상업책임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업의 결산보고서를 상업출자인, 합동인 또는 주주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업출자인, 합동인 또는 주주가 전항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

고 인정될 시 회계사에게 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상업책임자 및 주관 회계인원은 해당 연도의 회계 상의 책임에 대하여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승인을 득한 후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9조 상업을 대표하는 책임자는 각 결산보고서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상업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고자 할 시 상업을 대표하는 책임자는 그 상업적 이익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그 열람을 허락하여야 한다.

제70조 상업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이 검찰을 파견하여 같은 상업의 회계장부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71조 상업대표인, 주관 및 회계처리인원 또는 법에 따라 타인에게 회계처리 사무를 위탁처리한 인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60만원(NT¹)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1. 명백히 부실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회계증빙에 첨부하거나 장부에 기록한 경우.

¹ NT : 대만의 화폐 단위. 이하 화폐 단위 동일함.

二. 고의로 보존하여야 하는 회계증빙, 회계장부 보고서를 멸실하여 훼손한 경우.

三. 회계증빙, 회계장부 보고서의 내용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페이지를 훼손한 경우.

四. 고의로 회계사항을 누락하여 기록하지 아니하여 재무보고서에 부실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五. 그 밖의 부정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계사항 또는 재무보고서에 부실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72조 전자방식으로 회계자료를 처리하는 상업은 전 조에서 열거한 인원이 전자방식으로 회계자료를 처리하는 인원에게 다음 정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一. 고의로 부실한 자료를 등록하거나 입력한 경우.

二. 고의로 저장하여야 하는 회계자료를 훼손, 멸실, 교정하여 재무보고서에 부실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三. 고의로 회계사항을 누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여 재무보고서에 부실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四. 그 밖의 부정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계사항 또는 재무보고서에 부실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73조 주관, 회계처리인원 또는 전자방식으로 회계자료를 처리하는 유관인

원이 전 두 조의 죄를 범하였으나 사전에 거절을 표시하였거나 시정의 견을 제출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74조 법에 따라 타인의 회계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타인을 대리하여 상업의 회계사항을 처리한 경우 신대만폐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후 3년 이내에 재차 범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1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제75조 법에 따라 타인의 회계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타인을 대리하여 상업의 회계사항을 처리하고 제71조, 제72조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같은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제76조 상업을 대표하는 책임자, 경영인, 주관 및 회계처리인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대만폐 6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규정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二.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장부의 페이지를 훼손하거나 회계심사의 흔적을 소멸한 경우.

三. 제38조가 규정하는 기한에 따라 회계장부, 보고서 또는 회계증빙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四.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결산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五. 제6장, 제7장의 규정을 위반하고 내용이 현저히 확실하지 아니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제77조 상업대표인이 제5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 상업을 대표하는 책임자, 경영인, 주관 및 회계처리인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대만폐 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시증빙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에게 증빙자료를 교부한 경우.

三.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적시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四.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증빙자료를 장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
한 경우.

五.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六.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결산보고서를 본사에 비치하지 아니하
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절한 경우.

제79조 상업을 대표하는 책임자, 경영인, 주관 및 회계처리인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 二.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구비하여야 하는 회계장부 목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三.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四.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五.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에 따라 승인을 제청하지 아니한 경우.
- 六. 제70조가 규정하는 조사를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한 경우.

제80조 회계사 또는 법에 따라 타인의 회계사무의 처리 위탁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이 법 제76조, 제78조 및 제79조 각 관이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각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제81조 이 법이 규정하는 벌금에 있어 법원이 제79조 제6관에 해당하는 처벌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주관기관이 처벌을 결정한다.

제10장 부칙

제82조 소규모의 합동 또는 독자 상업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항의 소규모의 합동 또는 독자 상업의 인정기준은 중앙 주관기관이 각 직할시, 현(시) 구역 내의 경제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83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